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55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 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p>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